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및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을 폐지하면서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를 앞으로는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이 분장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환경과학원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생활환경정책실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자연환경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화학물질안전원 1개 과 및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장외영향평가서 등 심사 업무 인력 18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의 관리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9급 1명)으로, 홍수통제소의 사무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제5호를 삭제한다.

12. 비이산화탄소계(Non-CO₂)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항제9호 중 “및 관리”를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의3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를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로 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영산강물환경연구소의 관할구역란 중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전북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표 11 중 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8”을 “9”로,
열관리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12 중 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8”을 “9”로,
열관리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16의2 중 행정서기보 “2”를 “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16의3 중 행정서기보 “2”를 “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 및 별표 20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9조제1항 관련)

1. 환경부

평가대상 조직

조 직	정 원	평가기간
1) 생활환경정책실	1명 (고위공무원단)	2022년 1월 31일까지
2) 자연환경정책실 통합허가제도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1명)	2021년 2월 28일까지

2. 환경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 무	정 원	평가기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유역·지방환경청)	47명 (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생활환경정책실) ① ~ ⑥ (생 략)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u><신 설></u> 12. (생 략) ⑧ · ⑨ (생 략) ⑩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u>비이산화탄소계(Non-CO₂)</u> <u>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u> 6. ~ 8. (생 략) ⑪ ~ ⑫ (생 략) 제9조(수자원정책국) ① ~ ④ (생 략) ⑤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u>및</u> <u>관리</u>	제7조(생활환경정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비이산화탄소계(Non-CO₂</u> <u>)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u> <u>사항</u>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⑧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 8. (현행과 같음) ⑪ ~ ⑫ (현행과 같음) 제9조(수자원정책국)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 -----. 1. ~ 8. (현행과 같음) 9. ----- <u>및</u> <u>관리에 관한 사항</u>

10. ~ 12. (생략)

<신설>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정책지원팀 및 배출량조사팀을 두되, 정책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배출량조사팀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제41조(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다.

10. ~ 12. (현행과 같음)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① -----

--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

②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u>제42조(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다.</u>	<u><삭 제></u>
--	--------------------

[별표 11]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 는 방재안전서기보	· · <u>8</u>	· · <u>9</u>	+1
· · 열관리운영서기보	· · <u>2</u>	· · <u>1</u>	-1
· ·	· ·	· ·	

[별표 12]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 는 방재안전서기보	<u>8</u>	<u>9</u>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별표 16의2]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서기보	.		.		.	+1
	.		.		.	
			<u>2</u>		<u>3</u>	
	.		.		.	
사무운영서기보	.		.		.	-1
			<u>5</u>		<u>4</u>	

[별표 16의3]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서기보	.		.		.	+1
	.		.		.	
			<u>2</u>		<u>3</u>	
	.		.		.	
사무운영서기보	.		.		.	-1
			<u>5</u>		<u>4</u>	